

1. 개정 이유

-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나.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인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나목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자녀”를 “자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별표 4에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 거주시설	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

별표 5 I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쉼터”로 하고, 제3호 다목의 1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10)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5 II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는”을 “장애인 거주시설 중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으로 하고, 제2호가목 표의 제목에 “청능치료사”를 “청능사”로, “언어치료사”를 “언어재활사”로 한다.

별표 5 III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는”을 “장애인 거주시설 중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으로 한다.

별표 5 IV와 V를 각각 V와 VI으로 하고, IV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V.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1. 입지 조건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지역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목의 다중주택 및 다목의 다가구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및 다목의 다세대주택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이 지나치게 밀집 또는 분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규모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상시 20명 이상 생활할 수 있도록 복수의 개별 주거 공간을 마련하되, 각 주거 공간의 정원은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주거 공간의 정원을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구조 및 설비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각 주거 공간 내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해당 사무실에는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장애인 1명당 1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4)·7)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5)·6)의 공간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관련 장비를 갖추어 갈음할 수 있다.

1) 침실

가) 1인 1실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장애인의 동의를 받은 후 시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침실 면적은 1인실은 6.7㎡ 이상, 2인실은 10㎡ 이상으로 한다.

2)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이용 장애인 1명당 2.0㎡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이용 장애인 1명당 3.3㎡ 이상으로 한다.

3) 주방 공간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목욕실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세탁 공간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6) 건조 공간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화장실

대변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급수·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별 주거 공간이 위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거 공간은 비상재해 대비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무실, 상담실, 활동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용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바. 한 개별 주거 공간의 이용자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만 부부, 남매 등 가족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가. 기본 원칙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은 I. 공통기준 제4호 및 제5호와 II. 시설별 기준 제2호를 따른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적용 원칙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요원을 대신하여 생활지도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5. 시설 운영의 기준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요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장애인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지역사회 통합 및 이용 장애인 인권 보호

-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2) 시설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주민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

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 장애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건강관리

-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2)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활동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식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 등이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하여야 한다.

마. 일상생활 지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 욕구 등을 고려하여 이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바. 관리 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적

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기관의 운영방침
- 2)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 3) 지원 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 방안
- 4) 기관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 5) 기관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 6) 그 밖에 기관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사. 장부 등의 비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 가) 직원 관계철
- 나) 회의록철
- 다) 사업일지
- 라) 문서철
- 마) 문서 접수·발송대장
- 바) 차량 운행일지
- 사) 안전점검표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장애인의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 나) 교육·지원서비스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 다) 급식 관계 대장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수불대장

마) 비품(장비)대장

바)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사) 기관 이용 장애인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후원금 관계 서류(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후원금 영수증 발급 목록 장부)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아. 사업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 특성 및 욕
구 충족 등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2)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필
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별표 5 VI(중전의 V) 제3호 다목의 9)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를 “「소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 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 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 (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 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 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 지의 발급대상)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2. ----- ----- -----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 ----- -----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 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 애인의 배우자, <u>직계존·</u> <u>비속</u> , <u>직계비속</u> 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u>자녀</u>		나. ----- ----- ----- <u>직계혈족</u> ----- ---- <u>직계혈족</u> ----- ----- ----- <u>자녀</u> , <u>배우자의</u> <u>직계혈족</u> 및 <u>형제자매</u>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	------------------